

第59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地域開發委員會會議錄

第2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2月1日(土) 午前11時
場 所 第2會議室

議事日程

1. 業務報告의件
2. 서울特別市城北區無許可建物整備事業에대한補償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業務報告의件(都市整備局 所管)(城北區廳長 提出) 1面
2. 서울特別市城北區無許可建物整備事業에대한補償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5面

(11時09分 開議)

○委員長 鄭昌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業務報告의件(都市整備局 所管)(城北區廳長 提出)

○委員長 鄭昌萬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안 도시정비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도시정비국장 박석안입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아서 2대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창만 위원장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21세기 선진자치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委員長 鄭昌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동일

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를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 위원님.

○金甲濟委員 3쪽입니다. 3쪽에 보면 도시계획현황에 2,455km인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면적은 제외한 것인지 포함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가 포함이 안 됐다면 도시계획도로의 면적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16쪽입니다. 건축분쟁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1대 때 부터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 이제 시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호뭇합니다.

그런데 여기 인원을 보면 7인 이상 15인 이내로 돼있는데 소속공무원, 교수, 판검사, 변호사, 건축사 등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다시 조례 입법을 해야되는 것인지 또 안해도 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의원님이 참석하면 안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昌萬 다음 위원님? 나광수위원님 질의하세요.

○羅光洙委員 10페이지를 보면 신속한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길음4구역 까지와 종암1,2 지구 해서 6개 지구를 여기서 우리가 관할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보면 심의결과에 재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망되고 도시기반 시설 현황조사 사회적 현황, 구역지정 당위성 제시 등 이렇게 했는데 성북구에서 서울시로 올라가기 이전에 재개발과는 전문적으로 팀이 구성됐다 이렇게 청장님이나 도시정비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로 올라가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격을 느껴주면서 충분한 검토와 정밀한 조사를 해서 이 계획서가 제대로 짜여져 올라가가지고 바로 서울시에서 심의위에 통과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대충 그냥 그냥 여기서는 올라온 대로 검토만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올라온 거니까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만 시켜주면 서울시에서 알아서 잘해주겠지 이러한 망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치밀하게 해서 올렸다 할지라도 서울시에서는 검토결과에 불합격을 받아가지고 재심의하도록 나누고 있단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성북구의 재개발 하는 과정에서 한 두 동네가 아니라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있습니다. 어느 동네 하나 재개발 하면서 제대로 여기서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한번에 똑 떨어져나온 일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개발과의 전문팀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전문팀의 전문능력을 가진 직원들을 그 지역 하나 딱 도시계획에 올라오면 정밀하게 검토해서 이 정도면 서울시에서 충분하겠다 또 조합장과 조합임원진들, 또 설계사 합동으로 연구 좀 해가지고 올렸을 때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그때그때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6개 지역 여기서 설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도면 된다, 금방 그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 날짜가 얼마만큼 또 늦어지느냐, 2달 걸릴지 3달 걸릴지 1년 같지, 주민들에게 실망만 주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委員長 鄭昌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도시정비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갑제위원님께서 페이지 3쪽에 도시계획 구역 면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4.55평방킬로미터라고 한 것은 우리 구 행정구역 전체 면적입니다. 전체면적을 가지고 주거지역이 얼마, 상업지역이 얼마, 녹지지역이 얼마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도로만 포함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의 면적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면적이 나온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저희가 산출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6쪽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작년 연말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신 조례안에 포함이 다 입법이 돼있습니다. 돼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 필요한 세부운영 규정은 저희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구의원님들이 포함이 되면 안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법령상에 나온 것은 관계 전문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의원님들에 대한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실정에 밝은 분들이 오히려 고령적으로 들어오시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음동에는 길음동 의원님이 들어오시고 석관동에는 석관동 의원님이 오시는 것이 양쪽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하고 별도 상의해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광수위원님께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타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성북구가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장기간이 걸리고 검토해야 될 내용도 많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북구가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마는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은 못미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시에서 지금 검토가 자꾸 미뤄지고 있나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 편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을 좀 높여주는 것이 주민들의 사업상이나 주거안정대책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북구의회나 구청, 도시계획위원회나 구청장 의견이나 전부 그런 방향에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느냐 좀 줄여라, 용적률도 줄이고 층수도 줄여라 하는 기본적인 이러한 시각차이가 있다보니까 이제 서울시하고 저희 구가 좀 의견마찰이 있는거죠 저희가 일을 검토를 소홀히 했거나 노력을 안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이익이 좀 커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검토방향을 세우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도 좋지마는 기본적으로 도시경관이나 도시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건폐율도 낮추고 용적률도 낮추고 공기를 많이 확보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차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저희들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려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시 바랍니다.

○羅光洙委員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다보니까 결국은 삼위일체가 돼야되는데 서울시와 구와, 우리 주민간에 삼위일체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주민들은 사업상 용적률이라든가 고도제한을 좀더 많이 갖고싶고 중간역할 하는 구에서는 어정정해가지고 서울시 비위 맞추기도 그렇고 주민 입에 맞추도록 하면 서울시에서 빠꾸요, 서울시에 맞추면 주민들이 못하겠다 하는 것이요, 그래

서 엉거주춤 참 구에서는 죽을 맛이겠조, 그러나 서울시에서 내놓은 지난번 용적률과 고도제한, 이것도 과감하게, 그때도 누차 성북구청장님이나 도시정비국장님이나 박과장님이나 재개발과장이 노심초사 고생도 하고 많이 서울시하고 타협도 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결과는 우리 주민이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결과가, 우리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민원을 제기했을 때도 법이 안맞는 것도 내놓고 자기한테 피부로 와 느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봤자 자기 피부에 느끼지 않으니까 필요없다 이겁니다, 나중에 와서는, 고생만 해놓고 도로아미타불 돼요. 똑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 보세요. 그 밑에 공원촌치지역 위치변경, 안암동 말입니다. 조건부 가결.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도제한을 내리든가 아니면 공원을 꼭대기로 하고 주민들 밑으로 내려가라는 이런 뜻인데 그러면 거기 공사를 할 적에 상당히 많이 깎아내려야 할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다보면 주민들은 시기가 2년, 3년 늦어진다 이말입니다. 이거 재개발 하지말라는 것 하고 똑같아요. 이러면, 서울시에서.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그것은 지금 현실과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할때는 저희들이 현실적인 주민의 욕구도 최대한 반영을 해줘야 되고 또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도 창출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나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당장 생활이고 재산권입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현재만 추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하고 하다 보면 어느정도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성북을 정말로 영원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니까 그러한 부분적인 지적사항들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羅光洙委員 국장님, 재개발 문제 나왔으니 제가 한마디만 더 하렵니다.

월곡3동, 4동, 재개발 문제, 어제 건설국 소관에서 연장 900미터 해가지고 월곡로 20미터 확장하는 것 있잖습니까, 물론 설명

다 받았습니다. 뱅텐볼링장쪽하고 백마약국 밑에만 하고 3,4동 구간은 국장님이 분명히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월곡3,4동 안에 있는 공유지분, 그러니까 구청소관으로 돼있는 공유지분 가지고 대토를 할 수 있다, 그때 우리 월곡3동 주민들하고 있을 때 그런 말씀 분명히 하셨죠? 그러면 내가 재개발 조합 추진위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국장 아니라 구청장이라도 각서를 쓸 수 있겠느냐, 대토를 해주고 나서 관리처분 할 적에 그 땅값을 제하고 나머지만 찾아가겠다라는 각서를 쓸 수 있겠느냐, 어느 공무원이 쓰겠느냐, 누가 책임지겠느냐, 그 말 믿고 우리가 해서 되겠느냐, 우리 조합원이 부담할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재개발 해야된다, 지금 허울 좋게 월곡로 확장할 때 공유지분 있는 것 가지고 대토를 해준다, 그러면 관리처분 할 때 그 대토해준 나머지만 계산할 것인가, 그 각서 쓸 사람 있느냐 이말입니다, 성북구청 내에서. 없죠? 어차피 우리 조합원이 부담할 거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당신들이 필요로 해서 재개발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필요한 진입로를 확보했을 때 우리는 승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잘라서 말해줘야지 어정쩡하게 우선 재개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토해준다, 대토해준다면 그 각서 쓰세요. 그러면 내가 앞장서서 재개발 추진하려니까.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그것은 나위원장님이 뭘 오해하시나 본데요, 현재 그것은 법이나 조례에 다 명시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각서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법에서 그렇게 다 명시돼 있고요,

○羅光洙委員 대토가 된다 이 말이죠?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그렇죠.

현재 다른 여타 사업장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해주고 있습니다.

○羅光洙委員 그러니까 5미터가 확보되는 것을 구청 땅이 3,4동 안에 1,000명이 있든 5,000명이 있든간에 그것 가지고 대토해 주고 관리처분 할 때 나머지만 계산한다 이거죠? 분명하죠?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예.

○再開發課長 朴昌植 참고로, 어차피 재개발

관리처분이라는 수순이 다르잖아요. 구역지정 돼서 사업인가가 나가면. 아까 말씀하신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이 관리처분에서 불이익을 안받는 방법인데 허동익위원님 계시지만 여기 돈암3-3이 도로로 넣었으면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해서 그 분이 지분을 받기 때문에 이익이 가는데 지금 제외됐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재개발구역이 제외돼버리면 결국 도시계획도로상으로 보상밖에 못받거든요. 그래서 월곡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 결정된 데도 구역으로 넣었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넣었다는 얘기는 저희 도시계획 넓혀지는 부분에 재개발 구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도로를 낼 적에 조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식이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 대신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 지금 도로로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환, 상호교환을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합원에 실익이 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토, 그런 개념이 결국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羅光洙委員 아까 내 얘기가 이틀테면 구청 땅이, 국공유지가 1,000평 있었다 그러면

○再開發課長 朴昌植 그런데 국공유지가 점유한 부분은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고 국공유지에서 도로로 돼있는 데가 있어요. 도로로 돼있는 것만 도로로 내가지고, 국공유지 배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재개발관리처분 어느 게 이익이나 이런 관계를 도로 부분은 결국 전조합원이 분배를 해가지고

○委員長 鄭昌萬 재개발과장님, 나광수위원님, 이것은 끝나고 나서 관계공무원하고 충분히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羅光洙委員 이것은 회의록에 올라가야 나도 주민한테 할 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委員長 鄭昌萬 그리고 다음 김갑제위원님.

○金甲濟委員 다름이 아니고 박국장님이 5월달에 이것을 가동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시기를 당겨주실 수 있으면 당겨주셔야 되겠고, 아까 시행지침에 아직 마련이 안됐다 하는데 시행지침을 잘 해주시고 반드시, 아

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 해당지역의 의원님이 참석하시는 것이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허용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 지역에 그런 분쟁이 있는데 그 지역에 민의 대표라는 의원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안될 것이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면서 이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이 앞으로 혹시 민사소송에도 상당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상당히 힘이 있는 심의가 되겠는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가끔 보면 이웃간에 분쟁으로 하여금 준공을 못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진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 많이 있어야 합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박국장님이 시행지침을 잘 마련하셔서 빨리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昌萬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김순권위원장.

○金順權委員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도시재개발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할 계획이시죠? 그리고 할 의무사항인데 작년에 업무보고에 보시면 재건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안 나와 가지고 복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로 동소문동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를 보면 가사용 승인이 지금 임박해 있는데요.

그리고 주진입로를 보면 12m에서 10m로 줄인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지만 지금 포장에 많이 훼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준공이라든지 가사용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는 우리 성북구청 경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가사용 승인이라든지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전체적으로 도로라든지 여러 다른 여건들을 고려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점검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昌萬 김순권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답변받으실 겁니까?

○金順權委員 네, 재건축.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희들이 지금 재개발법은 재개발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건축 사업장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면서 금년에 재건축 사업장도 재개발 사업장하고 유사하게 업무감사라든지 또 안전 공사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너무 세부한 사항은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金順權委員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원래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정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작년에 조순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셨다고요. 그런데 개인의 한계에서 봤을 때 일차적으로 재개발은 법령을 각각 개혁을 하고 재건축은 그런 의사표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도 상당히 재개발에 못지 않은 여러 주민들의 민원상황이라든지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제도행정 차원에서라도 나름대로 어렵겠지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세부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97년에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昌萬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特別市城北區無許可建物整備事業에 대한補償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提出)

(11時54分)

○委員長 鄭昌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

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규를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박석안 도시정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특별시성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에 종전에 풍수해대책법을 인용한 조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법령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지급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중에서 조례 제30조에 보면 풍수해대책법 제30조를 인용하여 업무처리하는데 현행 법규가 자연재해대책법 41조로 개정됨에 따라서 재난 및 재해 우려가 없는 건물 철거보상을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를 인용해서 보상업무를 수행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관련 법규는 우리 서울특별시성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2조에도 있고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조문 대비표가 그다음 장에 있습니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 41조에 보면 종전의 풍수해대책법 제30조가 재해 등으로 해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 지역안의 시설 또는 물건의 점유자,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당해 시설 또는 물건을 제거 보완 기타 필요한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련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제41조로 바뀌었고 거기에서 제일 밑에서 두번째 줄에 도안이 안전조치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보상금지급조례 제2조에서도 풍수해대책법 제30조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재해대책법 제 41조로 인용하는 조문만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昌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專門委員 林洛吉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委員長 鄭昌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羅光洙委員 풍수해대책법 30조를 41조로 포함할 때는 자연스럽게 풍수재해도 여기에 다 흡수되는 거죠?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네.

○羅光洙委員 그럼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昌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석안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散會)

○出席委員 12人

鄭昌萬	文京周	金甲濟
徐榮振	許東翼	金東殷
金順權	金鈴基	羅光洙
辛在福	柳興先	

○缺席委員 1人

李鍊垌

○參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林洛吉
------	-----

○參席公務員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住宅課長	任瑄彬
再開發課長	朴昌植

都 市 整 備 課 長
建 築 課 長
公 園 綠 地 課 長

黃 義 泰
尹 炳 圭
金 圭 泰